

#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 2020 년말 만료되는 간접세 혜택 정책 살펴보기

2021 년 1 월  
Issue 1

## 개요

2020 년말로 일부 간접세의 단계적 혜택 정책이 만료됩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2020 년 국가 차원에서 비교적 많은 코로나 19 와 관련된 조세혜택정책이 출시되었는데, 이 중 일부 정책도 2020 년말 종료됩니다. 이러한 조세정책이 만료되어 종료되면 기업에 일정 수준 세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만료 전후의 과도기간 내 세무 처리에 유의하면서 2020 년말 만료되는 정책이 2021 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자체적인 세무 작업 플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뉴스플래시에서는 2020 년말 만료되는 간접세 조세 정책을 정리해보고, 과도기간 세무 영향 및 연장 가능성에 대해 PwC 의 견해와 관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상세내용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일부 간접세 혜택 정책은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 정책은 2020 년말 만료됩니다. 2020 년말 만료되는 간접세 혜택 정책 및 정책 연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목	주요 내용	정책 문서	연장 가능성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소규모납세자로의 전환	<국가세무총국 중고차 딜러 등 몇몇 증치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 년 제 9 호)	연장될 것으로 기대
	그룹 내 자금 무상대출 행위 면세	<재정부 세무총국 양로기관 증치세 등 면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19 년 제 20 호)	연장될 것으로 기대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의 위탁을 받아 제공한 일부 서비스 면세	<재정부 세무총국 양로기관 증치세 등 면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19 년 제 20 호)	연장될 것으로 기대

세목	주요 내용	정책 문서	연장 가능성
증치세	농업 관련 대출 이자소득 간이과세방법 적용 시 3% 징수율로 증치세 부과	<재정부 세무총국 중국우정저축은행 3 농금융사업부 농업 관련 대출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18 년 제 97 호)	연장될 것으로 기대
	납세자가 신지선(新支线) 비행기 생산 판매 시 5%에 따라 증치세 부과, 신지선 생산 판매로 발생한 증치세 기말 미공제세액은 환급	<재정부 세무총국 민간항공엔진, 신지선 비행기 및 대형 여객기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 년 제 88 호)	연장될 것으로 기대
	금융기관 소기업/영세기업 대출이자소득 면세	<재정부 세무총국 금융기관 소기업/영세기업 대출이자소득 증치세 면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18 년 제 91 호)	연장될 것으로 기대
	내자 R&D 기관 및 외자 R&D 센터가 구매한 국산설비 전액 증치세 환급	<R&D 기관 설비 구매 증치세 정책 계속 집행에 관한 공고>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공고 2019 년 제 91 호)	연장될 것으로 기대
	자체개발생산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증치세 즉시징수/환급(即征即退)	<재정부 세무총국 애니메이션 산업 증치세 정책 연장에 관한 공고> (재세 2018 년 제 38 호)	연장될 것으로 기대
	납세자가 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 면세	<재정부 세무총국 영화 등 업계 세비지원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 년 제 25 호)	코로나 영향 및 업계 회복 상황에 따라 결정
	호복성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3% 징수율이 적용되던 과세판매소득 면세; 기타 성시 증치세소규모 납세자의 3% 징수율이 적용되던 과세판매소득 → 1% 징수율 적용; 3% 징수율이 적용되던 예납증치세 항목 → 1% 징수율 적용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업무 복귀 지원 증치세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 년 제 13 호) <재정부 세무총국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정책 집행 기한 연장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 년 제 24 호)	코로나 영향 상황에 따라 결정
	방역 중점 보장 물자 생산 기업 면세; 대중교통서비스, 생활서비스 및 거주자 필수 생활 물자 택배 배송 서비스 제공 면세	<재정부 세무총국 코로나 19 방역 관련 조세 지원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 년 제 8 호) <재정부, 세무총국 방역 공급 보장 등 세비 지원 정책 실행 기한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 년 제 28 호)	코로나 영향 및 업계 회복 상황에 따라 결정
증치세, 소비세, 부가세	코로나 19 방역 기부 증치세, 소비세 및 부가세 면세	<재정부 세무총국 코로나 19 방역 관련 기부 지원 조세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 년 제 9 호)	코로나 영향 상황에 따라 결정

계세 (취득세)	기업 사업단위 개혁 및 재편의 계세 면제	<재정부 세무총국 기업 사업단위 개혁 재편 관련 계세 지원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 (재세 2018 년 제 17 호)	연장될 것으로 기대
토지증치세	기업의 개혁 재편 과정과 관련된 토지증치세 잠정 부징수	<재정부 세무총국 기업 개혁 재편 관련 토지증치세 정책 실행 연장에 관한 통지> (재세 2018 년 제 57 호)	연장될 것으로 기대

PwC는 상기 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과도기간 중 세무 영향 및 정책 연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치세 관련 정책

#### 일반납세자의 소규모납세자로의 전환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 년 9 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납세자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登記 할 수 있다: 전환일로부터 연속 12 개월 전(1 개월을 1 개 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또는 4 분기(1 분기를 1 개 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동안 누적 매출액이 500 만 RMB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고는 2020 년 5 월 1 일 발효되었으며, 2020 년 12 월 31 일 만료됩니다.

일반납세자의 소규모납세자로의 전환 정책의 역대 연혁을 보자면, 이전 정책이 만료된 후 바로 이와 유사한 정책이 나왔으며, 관련 기준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0 년 만료되는 해당 정책은 2021 년 상반기에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환 기준도 현재의 정책 요건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룹 내 자금 무상대출 행위 면세

재세 2019 년 제 20 호문에 따르면, “2019 년 2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기업 그룹 내 회사(기업 그룹 포함)간 자금 무상 대출 행위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시범지역 전면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 2016 년 제 36 호)에 따르면, 회사 또는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가 다른 회사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는 서비스 판매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증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 그룹 내부 차입은 통상적으로 그룹 내 각 주체가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금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이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상대출을 판매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부과하면 기업 내부 자금의 효율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합니다. 상기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는 2019 년 그룹 내 자금 무상대출 행위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하는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자가 증치세 공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면세 정책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산업 지원성 증치세 혜택 정책

2020 년말 효력을 상실하는 증치세 혜택 정책 중 일부 정책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성 혜택으로서 의료, 농업, 민항 및 애니메이션 등 산업을 망라하고 있으며, R&D 활동 및 소기업/영세기업의 발전에 대한 혜택 지원도 포함하고 있는 등, 국가의 최근 정책 방향과 발을 맞추어 상기 언급된 산업과 중국 R&D 활동 및 소기업/영세기업의 번영을 위해 강력한 조세 정책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2020 년 만료되는 정책은 2021 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정책 규정은 해당 산업의 발전 정도와 국가 지원 수준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영세기업 및 개체공상호 대출이자소득 면세 정책이 2021 년에도 지속될 경우, 구체적인 신용공여한도액, 금리수준한도는 국가경제발전수준 및 소기업/영세기업 발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에 따른 증치세 혜택 정책

2020 년 코로나 19 의 여파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증치세 혜택 정책을 발표하여 코로나 19 영향이 막중한 지역 및 산업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정책은 2020 년말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범위는 방역물자,

생활서비스 및 기타 관련 지원성 서비스 산업의 지원 혜택을 포함합니다. 중국의 적절한 방역 조치로 현재 중국 내 코로나 19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발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방역물자, 중점방역지역 지원,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코로나 19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혜택정책이 2021년에도 계속 연장될지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후속적인 방역 상황과 관련 산업의 회복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 정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면세 또는 간이징수혜택의 종료는 기업의 매입세액 처리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2020년 면세 또는 간이징수항목에 사용한 매입세액은 매입 전출 처리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면세 또는 간이징수혜택 정책이 2021년에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업은 해당되는 세율로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대응되는 매입세액은 정상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책 과도기간 내, 기업이 2020년말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에 면세 또는 간이징수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인정과 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상기 정책의 중단은 기업의 상품가격 비즈니스 플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고객간 가격 책정 시 세금포함가격으로 약정했다면, 면세 또는 간이징수정책이 일반징수정책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세금포함가격도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매계약을 재정리하고 재협상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수 있어 기업의 주의와 사전 조정이 필요합니다.

### 토지증치세, 계세 및 관련 정책

재세 2018년 제 57호문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의 체제개혁 재편 과정과 관련된 토지증치세는 잠정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세 2018년 제 17호문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체제개혁, 사업단위개편, 회사합병, 분할, 기업파산, 자산전환, 채권출자전환, 회사지분(주식)양도 등의 경우에서 승계하는 토지 및 건물소유권에 대해서는 계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체제개혁 재편 과정 중 토지증치세와 계세 혜택 정책과 관련하여, 상기 문서는 모두 종전의 혜택정책문서를 연장한 것으로서 그 정책 내용은 기본적으로 거의 유지되었습니다. 상기 2020년 만료되는 정책은 2021년에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상기 문서는 부동산개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바라며, 해당 규정이 후속 문서에서 변경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만큼, 기업들은 관련 정책의 연장 여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 핵심 요약

---

2020년은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많은 간접세 혜택 정책이 2020년말 만료됩니다. 기업들은 관련된 정책을 정리하고, 해당 정책의 지속성에 관심을 기울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세혜택이 변경되는 경우, 과도기간 세무처리에 유의하여 잠재적 세무 리스크를 피하면서 비즈니스 플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나상원 Partner** (86) (21) 2323-2625 sang.won.la@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김도현 Directo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태정** (86) (10) 6533-5733 taejeong.t.you@cn.pwc.com  
**(TP) 박영인** (86) (10) 6533-3891 young-in.y.park@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정자현** (86) (21) 2323-8879 jaheon.j.jeong@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소주 **(회계감사 & Tax) 황홍석** (86) (512) 6273-1850 hongseok.h.hwang@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박길수** (86) (20) 3819-2503 gilsoo.p.park@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Advisory) 한승희 Partner** (86) (21) 2323-3167 jennifer.s.han@cn.pwc.com



##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onsultantssz.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资料于 2021 年 1 月 4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mailto: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www.pwccn.com](http://www.pwccn.com)

© 2021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